

학교폭력 예방 교육

1. 학교폭력 정의

제2조(정의)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폭력 사안 종류

가) 신체적 폭력-때리기, 발걸기, 밀기, 도구로 때리기, 흉기로 때리기, 장난을 빙자한 가혹 행위와 때리기

나)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갈, 위협하여 갈취하는 행위(동태치기)

다) 언어적 폭력- 심한 욕설과 무서운 말로 겁주고 위협·공갈하는 행위로서 물리적인 힘이나 심리적 충격을 갖게 하는 행위(욕설하기, 나중에 보자, 없애버리겠다 등)

라) 괴롭힘과 따돌림(왕따)-상대방이 갖고 있는 신체적, 언어적, 행동 등의 약점을 확대·과장, 선전하거나 별명들을 나쁜 방향으로 이용한다거나 놀리며 괴롭히는 행위 (안좋은 소문내기, 빙정거리기, 같이 놀지 않기, 벽에 머리 짚기, 도시락이나 급식에 침뱉기, 매점이나 상점에서 먹을 것 사다 바치기, 숙제 대신 시키기, 분필이나 물건 던지기, 소풍이나 백일장등 행사 때 도시락이나 간식 준비하기 등)

마) 사이버 폭력- 인터넷, 전화, 핸드폰 등으로 나쁜 소문내기, 모함하기, 남의 ID를 훔쳐 멋대로 사용하여 남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 (문자 메세지로 모욕주기, 인터넷으로 협박, 음해, 육설하기...)

바) 학생간 성폭력- 성폭력은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처벌한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항)

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마)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항)

가) 심리상담 및 조언

나) 일시보호

다)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라) 학급교체

마)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 신고 안내

학교폭력피해나 금품갈취를 당했을 경우 바로 교무실(582-5300), 김재관(010-3651-5694)에 신고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초등대응 중요>

*전화신고 ☎ 112 또는 117

2017학년도 여름방학 생활 수칙

상서중학교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한다.
2. 매일 일정한 시간(예:3시간)이상 공부, 독서 등의 활동을 계속한다.
3. 한 가지 이상의 취미나 특기(문예, 음악, 미술, 체육, 등산 등)를 꾸준히 연마해 간다.
4.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생활습성을 유지한다.
5. 방학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가며, 학급 등교일에 중간 점검을 받는다.
6. 학급 등교일에는 빠짐없이 학교에 나와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다.
7. 유사시에는 비상 연락망 또는 E-mail을 통해 즉시 담임선생님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다.
8. 방학 동안 담임선생님 및 친구에게 한 통 이상의 편지나 E-mail를 띄운다.
9. 어울려 놀 때 불량서클·흡연·약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10.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야영, 낚시, 여행 등은 참가하지 않고, 반드시 부모님과 동행하여 많은 경험을 쌓고, 친척집도 방문한다.
11. 외출 시 용의복장을 단정히 하고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며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및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12. 학교생활 전반(집단 괴롭힘,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 환경, 유해 매체 관련, 학교생활의 어려움, 고통안전 등)에 걸쳐 담임 또는 존경하는 선생님과 편지나 E-mail을 통해 상담한다.
13. 반드시 출필꼭 반필면(나갈 때 인사, 들어올 때 인사)한다.
14. 범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금연운동에 동참하여 건전한 청소년이 됩니다.
15. 유해 업소를 출입하지 않고 약물 오·남용 예방으로 건강한 청소년이 됩니다.
16. 문화 국민의 수준은 기본적 사회 질서의 수준에 있으므로, 기초 질서와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17. 주유소, 식당 및 기타 유흥업소, 사행 행위장, 유기장 등에 시간제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미성년자 보호법 제2조에 저촉됨)
18. 무면허 운전(오토바이, 자동차, 농기계 등)을 하지 않는다.
19. 학교에서 배운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배운대로 실행하고, 컴퓨터 음란 및 자살 사이트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하루에 컴퓨터는 2시간 이상하지 않는다.
20. 등산시 안전사고(찰과상, 산불, 벌, 독충, 독뱀 등 독이 있는 동식물에 접근을 금한다)예방에 유의한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물놀이 전 유의사항

- 수영금지 지역에서는 절대로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 물놀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 하에 하여야 한다.
- 물에 갑자기 뛰어들면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식사직후, 공복 시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놀도록 하고, '수영금지구역' '위험'이라는 표시가 된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 잘 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곳을 잘 조사해보아야 한다. 장소에 따른 위험 가능성(물의 깊이와 바닥의 상태, 물의 온도는 적당한가, 물결에 의한 위험은 없는가, 물속에 위험한 물체나 생물이 없는가 등)을 알아보아야 한다.
- 계곡이나 바다의 경우 자칫 균형을 잃고 물에 훌쓸려 떠내려가기 쉬우므로 물살이 센 곳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
- 머리가 긴 경우 머리를 뒤로 묶거나 수영모를 써야한다.
- 아주 차가운 물이나 오염된 물에서는 수영하지 않는다.
- 튜브를 이용하는 경우 수영하기 전에 튜브의 바람이 꽉 찬는지, 바람이 새진 않는지 확인하고, 물속에서 튜브의 바람이 빠졌을 경우 소리 쳐서 보호자에게 알린다.

물놀이 시 유의사항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 다리, 몸통(심장)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물속에 들어간다.
- 물놀이 할 때 친구에게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
- 더러운 물이나 비눗물을 입에 넣지 않는다.
-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수영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물놀이 사고시 대처요령

- 옷을 입은 채 빠졌을 때에는 침착하게 신발과 옷을 벗어야 한다.
- 큰 소리를 쳐서 인근의 보호자 등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 어른에게 알리고, 절대로 직접 뛰어들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이 없을시 로프줄, 막대기 등을 던져주어 간접 구조하거나 119에 신고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이 의식이 없는 경우 인공호흡을 시키거나 곧바로 병원으로 보낸다.
(단, 배의 물을 뺀다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017년 7월 14일

상서중학교장